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63
----------	-----

발의년월일 : 2015년 10월 22일

발 의 자 : 남창진 의원(1명)

찬 성 자 : 김진영, 박중화, 진두생, 김영한,  
김동욱, 이신혜, 이숙자, 우미경,  
이석주, 최호정, 강구덕 의원(11명)

## 1. 제안이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안 제2조, 제 4조, 제6조, 제8조, 제 9조, 제 14조)

##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나.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개최하는 때”를 “개최하는 경우”로, 제1항과 제2항중 “주재하는 자”를 “주재할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제안하고자 하는 자”를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청취하고자 할 때”로 하고, 제2항중 “의견이 있는 자”를 “의견이 있는 사람”으로, 제3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견을 제출한 자”를 “의견을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과 2항중 “설치·관리할 자”를 “설치·관리할 사람”으로, 제2항중 “처리하는 자”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해당하는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지정하고자 하는 때”를 “지정하고자 할 때”로, 제2항중 “자문하고자 하는 때”는 “자문하고자 할 때”로 한다.

제22조제4항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

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하고, 제5항 “허가받은 자”를 “허가 받은 사람”으로 하고,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25조제3항과5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박물관·미술관·기념관)으로서 <u>당해</u>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p> <p>6.~9. (생략)</p>	<p>5.----- ----- ----- 해당 ----- ----- -----.</p> <p>6.~9. (현행과 같음)</p>
<p>제41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p> <p>①~② (생략)</p> <p>③수변경관지구안에서 6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u>당해</u> 허가권자가 산지, 구릉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변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 (생략)</p>	<p>제41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해당</u>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59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p> <p>① (생략)</p> <p>②구청장은 <u>당해</u> 자치구의 도시계획관련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59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해당</u> -----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 3. 미첨부 사유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것임으로 추가 비용 발생의 요건이 없음.

####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남창진